

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같은법 제23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의거 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4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: 용산구 신창동 76-1번지 일대
3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: 6,071,10 m^2
4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미정
5. 조합의 명칭 : 신창동 76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6. 사무소 소재지 : 용산구 효창원로 43
7. 조합설립인가일 : '25.04.01.